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6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48305 재산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구단169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2. 24.
판 결 선 고	2016. 3.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①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재산세(건축물) 4,262,030원의 부과처분 중 1,379,189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재산세(토지) 20,723,950원의 부과처분 중 17,231,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6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9행부터 18행까지 부분(제4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아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단실은 '영업장 전용면적'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여 영업장을 영업장소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영업장소에는 영업장 전용구역 외에도 영업장 공용구역, 즉 영업장 전용구역 밖에 위치한 화장실, 출입구, 복도 등을 포함하므로 영업장 전용구역은 영업장소의 구성요소로서 영업장소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②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유흥주점영업의 경우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의 구별기준으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 대비 영업장 전용면적의 비율 또는 객실 수'를 두고 있는데,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가 사치·향락성 재산의 소비를 억제하고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반영구적인 객실이 차지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 사치·향락성의 정도의 판별에는 영업장 전용구역 중 객실 부분과 객실 외의 부분을 비교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사치·향락성 영업 행위와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영업장소보다는 영업장 전용구역이므로 영업장 전용구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위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6

③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의 영업장 전용구역은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주된 공간과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데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조리시설 등과 같이 주된 공간에 직접 접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계단실은 위와 같은 유흥주점영업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위 공간에 직접 접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7면 2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식품위생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계단실을 포함한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단실 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6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의 기준 중 하나의 요소는 '영업장의 전용면적'이고, 중과대상이 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영업장소의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과세방식은 앞서 본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김경환

판사 정승규